2025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

『2025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』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<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>

< 주요 일정 >

신청 · 접수기간	선정평가	협약	
'24년 10월 7일 ~ '25년 1월 6일	′25년 1~3월	'25년 4월 ~	

<2024년 대비 2025년 사업 변경 사항> (는 생략가능)

구분	2024년	2025년
신청방법	도입기업 단독 으로 사업신청서 접수	도입-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계획서 접수
접수시기	'24. 3월 ~ 4월(1개월 내외)	'24. 10월 ~ '25. 1월(약 4개월)
	뿌리기술 14개 업종 및 고탄소 배출	
신청기업	상위 10대 업종 영위 중소·중견	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·중견기업
	제조기업	
우대사항	_	'24 CBAM 대응인프라구축 사업(중진공)
十川八〇	-	선정기업 서면평가 면제
· 가점	25개 항목에 대해 항목당 3점, 최대 5점 인정	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, 항목당 3점, 최대 5점 인정
-	단, 별도 4개 항목은 추가 5점 부여	F
관리절차	최종감리 ▶ 완료점검 ▶ 집중A/S ▶ 최종평가	최종점검 ▶ 최종평가 ▶ 집중A/S ▶ 최종재평가
변경사항		<u> </u>
중간점검	기술설계완료 후 진행	기술설계완료 후 진행(협약후 3개월 내)
최종점검	최종감리 후 완료점검 진행	최종점검으로 통합
집중A/S	집중A/S 6개월 필수 수행	최종평가 결과 "보완" 시 집중A/S 및 재평가 추진

<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사업(舊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) 안내 >

- **사업계획서 작성** 및 **공급기업 추천** 등이 필요한 기업은 '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('24.7월 기 공고)'을 통해 **컨설팅** 및 **공급기업 추천을 받을 수 있음**
- 기업이 컨설팅 수행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며, 최종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구축예정인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중간점검 전까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(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*)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
 - * 컨설팅 횟수 4회, 기업은 컨설팅 비용(21만원(VAT미포함)) 자부담 필요

1. 사업개요

□ 사업 목적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

□ 지원 내용

- (구축지도 컨설팅)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전체 구축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, 변경사항 관리, 성과측정 등 전주기 지원
- (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)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
 - (FEMS 솔루션) 공정·설비 에너지사용량 관리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향상 솔루션(FEMS) 구축 지원
 - (제어·계측 디바이스) 주요 에너지 다소비 공정·설비 및 FEMS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 및 계측 디바이스
 - * 센서, 전력량계, 유량계, 전력량계, 유량계,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,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, 엑츄에이터, PLC·HMI·DCS 등 제어장비 등
 - (고효율 설비 개체) 에너지 다소비 설비, 노후 유틸리티 및 변압기, 고효율 수변전 시스템 및 스마트 배전기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개체 도입 지원
 - * 유틸리티 설비는 생산 공정과 연결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, 독립 운영 설비(사무실용 에어컨·냉장고·정수기, 난방용 전열기 등)는 지원 불가

< 예시 >

- 에너지 효율화 수준 향상을 위한 FEMS 신규 도입 및 기능 개선
-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및 시스템 연동
-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및 기존 시스템 연동

□ 지원 대상

○ 국내 중소·중견기업 중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

□ 지원 규모 및 조건

- (지원규모) 20개 내외(변동 가능)
- (지원조건) 총 사업비의 50%(2억원) 이내(최대 9개월 이내)

지원	원유형	지원기간	지원한도	지원비율	구축목표수준*
그ㄷ쉬	수준향상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50% 이내	중간1 이상
고도화 -	동일수준	최대 6개월	최대 0.5억원	50% YI-II	목표설정필수

- *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- ** "고도화(동일수준)"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(수준별 1회 지원 가능)
- *** FEMS 솔루션에 한하여 지원 가능(MES·ERP 등 타 솔루션 지원불가)
- **** 선정기업은 사업착수 시 구축 공정(설비) 內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의무적 설치

2.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

□ 신청 기간 및 방법

- (신청 기간) 2024년 10월 7일(월) ~ 2025년 1월 6일(월) 17시 까지
 -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량 과다로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 마감일 2~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(접수 마감일 17시 이전 제출 완료 필요)
 - ☞ 공고 미숙지,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
- (신청 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-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세부 공고명에 '탄소중립형' 검색 → 접수 신청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(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 - *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에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

○ (제출서류)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

구분	제출서류 목록
도입기업 제출	 최근 3개년도('21~'23) 재무제표 각 1부(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) ●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련 증빙(엑셀파일 작성 후 첨부) * 전력 연료사용량 관련 고지서등 탄소배출량 산정 활용 증빙자료 별첨 ○최근년도('23~'24)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(해당시, 직접수출만 인정) *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에서 발급 ○ 가점 증빙 서류(해당시,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) ○ ESG 자가진단 보고서 1부(선택사항) * ESG 통합플랫폼 홈페이지(https://kdoctor.kosmes.or.kr/esgplatform) → 회원가입 및 인증 → ESG 자가진단 → 진단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→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시 보고서 업로드
공통 제출 (도입·공급기업)	○ 사업 계획서(도입-공급기업 작성 후 도입기업에서 제출) ○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○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단 도입기업은 종사업장에 구축 시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 ○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○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
^{*}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의 '알림/참여마당-자료실' 참고

□ 신청자격

- (도입기업)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및「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소·중견기업
 -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 - *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고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 제출
-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'공급기업 Pool'에 등록된 기업
 - * (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알림/ 참여마당 - 공지사항'에서 "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(1077번 게시글)" 참조
- (지원제외사항) 신청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원 대상에서 제외

< 부적격 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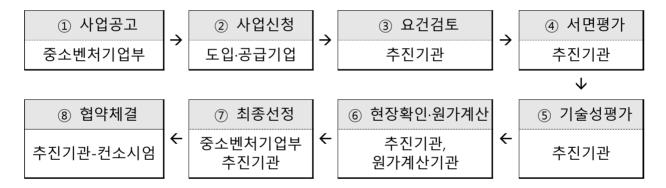
▷ 휴·폐업중인 기업

-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-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▷ 개별 사업공고에서 '신청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-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(붙임1 참조)
- ※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·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3. 평가 및 지원 절차

☞ 평가, 선정,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등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원 절차



□ 평가 절차 (평가지표 붙임1 참조)

구분	주요 내용	세부 방법
서면평가	○ 사업계획서 기반의 서면평가를 통해 목표수 1.5배수 내외 선발	○지원 필요성 및 적정성, 도입기업 역량 등을 평가
기술성평가	○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 발표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	○지원 필요성 및 적정성, 공급기업 역량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 ○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
현장확인 및 원가계산	○스마트공장 구축예정 현장을 확인하여 적/부 판정 ○사업비 내용의 적정성 검토	○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여부 및 가점 확인 ○원가계산기관을 통한 사업비 원가 검토 등 사업비 조정
최종선정	○최종 지원과제 선정	○최종 지원 및 후보과제 선정

- (서면평가)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, 지원 적정성 및 기업 역량 등을 서면으로 평가
 - * '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인프라구축 사업 선정기업은 서면평가 면제
- (기술성평가)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지원필요성, 지원적정성, 공급기업역량, 파급효과 등을 대면(발표)으로 평가
- (현장확인 및 원가계산)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, 신청가점 등의
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등 진행
 -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, 일부 예외 인정*. 단, 공장설립(계획)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가능여부 확인
 - * (예외 인정항목)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
- (최종선정)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원과제 확정

4. 유의사항

☞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

□ 신청·접수 관련

- (컨소시엄 구성)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,
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
 - 다만,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(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)
 - ※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공급기업 추천 등이 필요한 기업은 '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('24.7월 기 공고)'을 통해 컨설팅 및 공급기업 추천을 받을 수 있음
- (구축 목표 설정)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,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'동일 수준' 유형으로 신청
 - ※ (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) '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→ 사업안내 → 도입기업 지원현황' 에서 조회 ('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)
 - ※ '동일수준' 예외 사항
 -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**초과 달성**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**"고도화"** 신청 가능 * (예시, 초과달성) ①'기초'목표로 수행후 '중간1' 달성, ②'중간1'목표로 수행 후 '중간2' 달성
 - **자체적으로**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'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"고도화" 신청이 가능
- (보안대책 수립)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, 기업데이터
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·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

□ 사업비 편성 관련

 (필수비용) 회계 정산 수수료, 교육비 및 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비용에 필수 편성, 미편성 시 총 사업비와 별개로 도입기업 부담 - (정산 수수료)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

총사업비 규모	표준수수료(공급가액 기준)	비고
50백만원 이하	455천원	
200백만원 이하	637천원	브기네 제이
400백만원 이하	910천원	부가세 제외
400백만원 초과	1,182천원	

- * 정산대상 사업비(총사업비) :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
- (교육비) 스마트공장 기술교육(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) 수강을 위한 교육비 100만원 필수 편성
- (기술임치비)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를 위한 비용 45만원 필수 편성

< 기술임치제도 >

- **(임치제도)** 사업 결과물의 핵심정보를 보관하여 개발결과, 보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
- **(임치효과)**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,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
- (의무사항)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,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,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
- ※ 임치기관: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, escrow@win-win.or.kr)
- (현물편성)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(현금·현물 모두가능)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%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
 - * 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, 고도화 4천만원 이내에서 편성
 -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*을 편성 가능하며,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
 - *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, 소기업 규모 기준은 [참고] 확인
 -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사후관리(시스템 안정화, AS관리 등)를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
 - 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

□ 교육 이수

- 선정된 도입·공급기업은 "스마트공장 교육"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
 - (교육기관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

<스마트공장 교육 현황>

구분	세부 내용
사업관리교육 (온라인)	- 대상 : 도입·공급기업(대표자 및 임원, 실무자)[총 4명] - 내용 : 사업지침, 부실·부정구축방지교육, 우수사례, 사업비 사용법 등 *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,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- 비용 : 온라인교육 무료수강(https://ssup.kosmes.or.kr)
기술교육 (오프라인)	- 대상 : 도입기업(대표자 및 임원, 실무자)[총 2명] - 내용 :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,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-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(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)

^{*}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·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

□ 기타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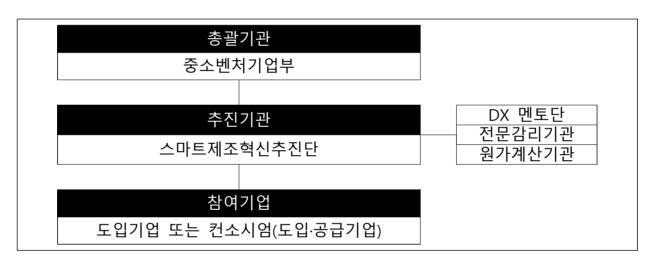
-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
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
 - ※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
- 자격·유형·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, 오기재·누락· 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·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
- 온라인 신청·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

5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(제2023-80호, '23.8.7)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
 - 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기관별 역할

구분	주체	역할
총괄기관	중소벤처기업부	-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
추진기관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- 사업 추진계획 수립, 세부관리기준 제개정 -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
참여기업	도입·공급기업 또는 도입기업	- 스마트공장 구축 등

6. 문의기관

□ 담당기관 연락처

담당기관		문의사항	전 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	시행계획 공고관련 문의	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
추진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		044-300-0956, 0960
시스템	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	사업관리시스템 - 전체메뉴(우상단) - 마이페이지 - 고객센터 - SR요청	

☞ 관련 웹사이트
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: http://www.mss.go.kr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: http://smart-factory.kr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(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) : http://pf.kakao.com/_IIfqd

붙임 1

평가 지표

□ 서면평가 지표

	평가 항목	배점
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	◦ "AS-IS/To-BE"의 내용이 탄소저감 전략(현재 에너지 사용량 분석을 통한 개 선방향 도출 등)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?	10
	◦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통해 구축(적용) 하고자 하는 요소가 수출품목 또 는 수출품목 생산공장과 어느정도로 부합되는가?	10
(30)	◦수행하고자 하는 "탄소중립 스마트化 추진 목표"의 내용이 에너지/생산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"목표수준" 달성에 가능한가?	10
	∘ S/W(솔루션 등) 및 H/W 구축 내용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?	10
	○핵심성과지표의 설정이 타당한가?(에너지 지표 설정 근거 제시, 구축목표 – 구축 내용 -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, 지표 계산식 제시, 탄소저감 목표치 등의 적절성)	5
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	◦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"주요 내용"의 범위가 명확하고, "탄소저감 목 표수준"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	10
스마트등성 지원 적정성 (40)	○ "에너지/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5
	∘ "에너지/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의 주요 에너지다소 비 공정, 설비와 높은 수준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었는가?	5
	○ 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"산출물 예정목 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	5
	∘에너지/생산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역량을 보유하여 활용 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?	5
도입기업	∘ 기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및 활동을 수행한 노력이 있는가?	5
구립기립 역량	∘ 매출액 증가율	5
(30)	∘ 영업이익 증가율	5
	∘ 부채비율	5
	∘수출실적 여부	5
	합 계	100

<도입기업 역량 배점기준>

항목			배점		
٥¬	5점	4점	3점	2점	1점
매출액증가율	12%이상	12%미만~9%이상	9%미만~6%이상	6%미만~3%이상	3%미만
- 영업이익증가율	10%이상	10%미만~7.5%이상	7.5%미만~5%이상	5%미만~2.5%이상	2.5%미만
부채비율	60%미만	100%미만~60%이상	140%미만~100%이상	180%미만~140%이상	180%이상
수출실적	0	-	-	-	Х

- *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매출액 증가율(1점), 영업이익 증가율(1점), 부채비율(1점) 부여
- * '2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(3점), 영업이익 증가율(3점) 부여
- * '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(3점), 영업이익 증가율(3점), 부채비율(3점) 부여

□ 기술성평가 지표

	평 가 항 목	배점		
탄소중립형	◦ 탄소 배출이 기준 이상(탄소배출량 1,000tC₂ 기준)으로 발생하거나, LCA, CF100 등 공급망에서 탄소저감에 대한 요구있거나 규제대상 제품인가?	10		
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	∘ 도입기업의 공정프로세스 중 탄소배출 및 에너지 관리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 명 확한 현황제시가 되었는가?	10		
(30)	∘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후 탄소저감, 에너지저감 등 구축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?	10		
	· 기업현황, 생산공정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 추진 전략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해당 "목표수준" 제시 및 달성이 가능한가? (에너지 효율화 관점)	10		
티스즈리칭	· 수행하고자 하는 "탄소중립 스마트化 추진 목표"의 내용이 탄소중립을 위해 에 너지 데이터가 분석·활용되도록 스마트化 추진내용이 제시되었는가?	10		
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	○도입기업의 주요 에너지 多소비 공정, 설비와 높은 수준으로 연결되도록 수 집데이터 및 신뢰성 있는 수집방법이 제시되었는가?	10		
(45)	○ 탄소저감 목표에 따른 핵심성과지표의 설정이 타당한가?(에너지 지표 설정 근 거 제시, 구축목표-구축내용-성과지표간 내용 연결, 지표 계산실 제시, 탄소저 감 목표치 등의 적절성, 객관적인 측정방법)	10		
	∘ 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	5		
	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행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거나, 사업기간 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능력이 충분한가?	5		
공급기업 역량 (25)	◦ 탄소중립 대응에 효과적인 기술(AAS, 클라우드, 표준형FEMS 등)의 적용 및 개발 가능성이 높고, 관련 시장 확대가 높은 수준으로 기대되는가?	5		
(23)	。공급기업의 사업참여 투입인력(개발 PM 등)과 업무 인프라가 사업수행에 적합한가?	5		
파급효과	◦탄소감축 우수사례 창출 및 동일·유사 업종으로 적용·확산 가능성	5		
(10)	◦고용창출, 수출증대 및 해외진출, 경영성과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	5		
합계				

[※] 동점 과제는 '①가점 제외한 총점, ②지원 적정성, ③지원 필요성, ④공급기업 역량, ⑤파급효과'의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

※ (참고) 가점 항목(4개)

구분	항목	세부 내용	제출 서류
1	수준확인	·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'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	수준 확인서 (발급일로부터 3년이내)
2	스마트 제조 표준	· 스마트제조 표준*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,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* 적용 표준 : ① OPC-UA (IEC 62541) ② AAS (IEC 63278)	사업계획서 (2.6 표준연계 작성) *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
3	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	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%인 기업 ('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) 	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
4	「글로벌강소 기업 1,000+」	· 「글로벌 강소기업 1,000+」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	「글로벌강소기업 1,000+」프로젝트 지정서

[※] 가점 항목당 3점, 최대 5점 가점 부여(최대 2개까지 인정)

□ 현장 확인 항목

확인 항목		
	。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(휴·폐업 등)	적/부
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	·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, 설비 등 일치 여부	적/부
	·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(정상가동 등)	적/부
가점여부 	•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	-

참고

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식료품 제조업	C10		
2. 음료 제조업	C11	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평균매출액등 - 120억원 이하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15. 가구 제조업	C32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
17. 수도업	E36	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Α		
19. 광업	В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	
20. 담배 제조업	C12	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29. 건설업	F		
30. 운수 및 창고업	Н		
31. 금융 및 보험업	K	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	
33. 정보통신업	J	50억원 이하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	F (F2C TILOI)		
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	
35. 부동산업	L	평균매출액등	
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М	30억원 이하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- 평균매출액등 - 10억원 이하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
41. 교육 서비스업	Р	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

^{1.}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^{2.}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